

프랑스의 계획계약제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「지역발전협약제도」 필요

-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역간에 사업의 중복투자(따라하기 관행) 문제 심화 등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여러 문제점이 누적되고 있는 현상을 극복해야 함
- 프랑스는 1982년부터 지방분권화와 함께 계획계약(plan contract) 시스템을 도입하여 국가와 지자체 협력을 통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,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을 조화시키는 동시에 지방분권화를 성공적으로 추진중임
 - 계획계약(plan contract)이란,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공동의 이해관계에 있는 사업을 상호 협의하여 선정하고, 사업 추진에 있어서 재정투자를 일정기간 상호 분담하여 집행할 것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식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사업 추진하는 방식을 의미함
- 참여정부의 핵심과제인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촉진하기 위해 프랑스의 계획계약제도를 한국 실정에 맞춘 「지역발전협약제도」를 도입해야 함
 - 국가와 지역의 이익이 조화되는 전략적 프로젝트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선정하고, 사업계획과 투자에 대한 협약(계약)을 통해 추진할 수 있는 「지역발전협약제도」의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필요

1. 배 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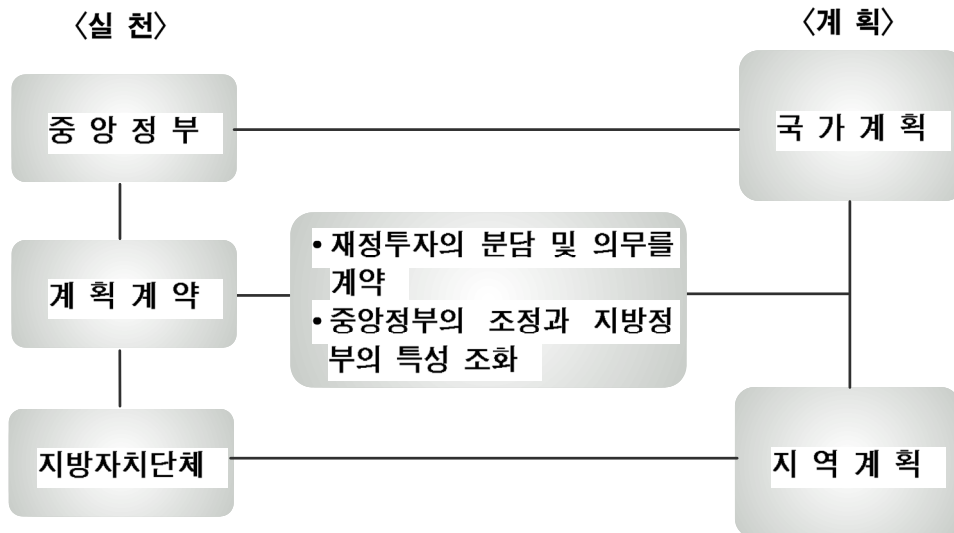
- 참여정부에서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개발사업 추진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극복해야 함
 - 지자체간 사업의 중복투자문제 심화(예 : 바이오 산업단지 따라하기 관행)
 - 국가지원사업에서의 지역의견 및 지역특수여건의 고려 미흡
 - 지역개발사업의 남발과 이에 따른 국가예산지원요구 팽배
 -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국가의 안정적 지원 불투명
 - 국토계획, 지역계획의 실천장치 미흡
-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, 지방분산 - 지방분권 - 지역혁신 등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 및 지역발전 운영체제 필요
- 국가발전과 개별지역의 발전이 결합될 수 있도록 지역개발사업에 있어 계획적, 전략적, 협력적 방식을 통한 계획 및 집행체계가 필요함 : 프랑스의 계획계약제도 벤치마킹 필요

2. 프랑스의 계획계약제도

- 1981년 프랑스 대통령선거에서 미테랑이 당선됨에 따라 선거공약인 지방분권화, 계획화, 자율관리의 추진 필요성이 제기됨
- 계획개혁에대한법률(1982년 7월 29일)에 근거하여 계획계약(Plan Contract) 제도 도입
 - 계획계약이란,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공동의 이해관계에 있는 사업을 상호 협의하여 선정하고, 동사업의 재정투자를 일정기간 분담하여 집행할 것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식계약을 통해 상호 약속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제도임
- 지방분권의 시행과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중앙정부의 사업간에 조화를 기하기 위해 도입됨
 - 지방의 활성화와 국토균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
 - 국가는 국토개발의 전반적 목표를 달성하면서 지역간 조화와 안정도모

- 지방정부는 계약에 의해 안정적으로 확보된 재원을 이용하여 지역이 필요로 하는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

〈프랑스 계획계약체계〉



- 프랑스는 제9차 경제계획(1984~1988)에서 공식적으로 계획계약제도를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추진중
 - 계약기간은 5~7년이며, 1984년부터 도입되어 현재 제4차 계획계약이 진행중이고, 수상 직속의 범정부적인 국가균형개발기획단(DATAR)에서 총괄
 - 제1차 : 1984~1988, 제2차 : 1989~1993, 제3차 : 1994~1999, 제4차 : 2000~2006년

3. 한국에서의 「지역발전협약제도」 도입방안

- 국가와 지역의 이익이 조화되는 전략적 프로젝트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사업계획과 투자에 대한 협약(계약)을 통해 추진할 수 있는 프랑스의 계획계약제도를 한국 실정에 맞춘 「지역발전 협약제도」로 시행 필요

국토 · 지역 + 프로젝트 + 전략 = 계약

- 지역발전협약제도를 통해 국가균형발전, 지방분권, 사회적 통합을 촉진할 수 있음

- 초기단계에서는 시범사업분야를 선정하여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협의·선정하고 지원조건, 투자분담, 사업내용 등에 있어 상호 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며,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
 -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간 재정여건, 사업계획수립능력 등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적절한 투자 분담 등 역할 분담이 바람직
 - 시범사업의 예 : 특화산업 클러스터, 지역혁신(RIS)사업 개발, 개발촉진지구 개발, 소도읍 개발분야 등의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
- ※ 최근 행자부에서는 소도읍 육성시책과 관련하여 선택과 집중원리에 의거 지역특성을 반영 전국에서 14개 소도읍을 선정하여 3년간 각 소도읍별로 100억원의 국고지원과 지자체별 개별분담에 관한 소도읍 육성협약계획을 시행중(2003. 5. 9)
 - 체결된 계약내용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해야 함
- 시범사업의 계약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또는 총리실 등 범정부 차원에서 총괄·조정할 수 있을 것임
 - 법적 장치로는 새로 제정하려는 「국가균형발전특별법」에 관련조항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며 지침으로도 시행 가능함
- 지역발전협약제도가 도입되면 국가균형발전, 지방분권 등의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긍정효과가 발생할 것임
 - 국토계획과 지역계획의 실천력이 제고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동반자적 관계로의 변화가 촉진될 것임
 - 지역개발사업의 합리성, 예견성, 안정성이 증대되고 지역간 투자중복의 방지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함
 -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지자체는 중앙정부와, 중앙정부는 지자체와 상호 협의 및 협력과 참여에 의하여 계획하고 실천 가능함

국토연구원 박양호 선임연구위원 (yhpark@krihs.re.kr, 031 - 380 - 0140)